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본문 중 “법 제32조제7항”을 “제3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9조(진단기관의 지정기준) <u>법 제32조 제7항</u> 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.	제39조(진단기관의 지정기준) <u>법 제32조 제8항</u> 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제51조(업무의 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 1. ~ 11. (생략) 12.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<u>(신설)</u> <u>12의2.</u>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·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. ~ 16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51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<u>12의2.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</u> <u>12의3.</u>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·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. ~ 1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<u>부칙</u>	<u>부칙</u> <u>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/u>